

경제 및 고용 동향

◆ 2012년 11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8% 증가, 전월대 비 1.1% 증가

○ 2012년 11월 생산은 건설업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광공업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8%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기계장비(-9.0%), 비금속광물(-9.3%), 금속가공(-4.2%)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14.7%), 화학제품(2.7%), 의약품(9.4%)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9% 증가(전월대비 2.8% 증가)함.

－ 서비스업 생산은 교육서비스업(-0.9%), 숙박 및 음식점업(-0.3%)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 및 보험업(2.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8%), 도소매업(1.5%), 운수업(3.0%)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0% 증가(전월대비 0.8% 증가)함.

○ 2012년 11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3.9% 증가, 투자는 9.3% 감소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7.3%), 승용차 등 내구재(6.0%),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8%)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3.9% 증가(전월대비 2.3% 증가)함.

－ 설비투자는 자동차, 기타기기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일반기계류, 기타 운송장비 등에서 투자가 부진하여 전년동월대비 9.3% 감소(전월대비 0.3% 감소)함.

－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 호조로 전월대비 1.9% 증가한 반면, 건축공사의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2.2% 감소함. 건설수주(경상)는 기계설치, 신규주택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공장, 통신, 도로, 재건축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7.4% 감소함.

- 11월 동행종합지수는 건설기성액, 광공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6% 증가하였으며,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상승함.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건설수주액 등은 감소하였으나 재고순환지표,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3p 상승함.

◆ 2012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4% 상승(생활물가지수 0.7% 상승)

- 2012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7(2010=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2%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 1.4% 상승하여 지난달(1.6%)에 이어 1%대를 시현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기타상품 및 서비스 (-4.1%) 부문만 하락하였고 의류 및 신발(4.0%), 주택·수도·전기·연료(3.6%),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1.8%), 주류 및 담배(1.8%), 교육(1.7%), 교통(1.4%) 부문 등을 중심으로 상승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09					2010					2011					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1월	1/4	2/4p	3/4p	11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5.7	-6.1	4.3	16.2	-0.8	25.8	19.5	10.9	11.7	16.2	10.4	7.2	5.3	5.0	6.9	5.7	3.8	1.5	0.4	2.9(2.3)
	제조업 생산	-16.5	-6.6	4.4	16.8	-0.9	26.8	20.2	11.2	11.9	16.3	10.6	7.4	5.1	5.3	7.0	6.3	4.2	1.5	0.3	2.9(2.8)
	출하	-14.9	-5.8	2.1	12.8	-1.7	21.8	17.2	9.9	11.9	14.3	11.9	7.2	4.9	3.5	6.7	3.5	3.3	1.5	0.4	1.5(1.3)
	내수	-15.7	-5.9	3.4	12.3	-1.8	21.2	15.4	6.6	8.3	11.5	6.8	3.8	2.7	0.2	3.3	-0.5	0.3	-1.3	-1.5	-0.6(0.5)
	수출	-13.8	-5.7	0.4	13.3	-1.7	22.5	19.7	14.5	16.9	18.1	18.1	11.6	7.7	7.2	10.8	8.0	6.7	4.9	2.3	3.8(2.1)
	서비스업생산	-0.3	2.4	1.9	3.7	2.0	5.7	4.0	2.3	3.1	3.9	2.8	3.3	4.5	2.7	3.3	3.0	2.5	1.7	1.6	2.0(0.8)
소비 소비재 판매	-4.7	1.5	2.8	10.8	2.6	9.9	4.9	7.5	5.1	6.7	5.4	5.7	4.7	1.9	4.3	1.2	2.0	1.0	1.7	3.9(2.3)	
투자 설비투자	-17.9	-12.9	-9.9	10.2	-8.2	25.5	24.5	29.3	13.5	24.2	5.4	4.8	-3.1	-4.7	0.7	-2.8	9.4	-0.4	-7.1	-9.3(-0.3)	
물가	3.9	2.8	2.0	2.4	2.8	2.7	2.6	2.9	3.6	3.0	4.8	4.2	4.8	4.0	4.0	4.0	3.0	2.4	1.6	1.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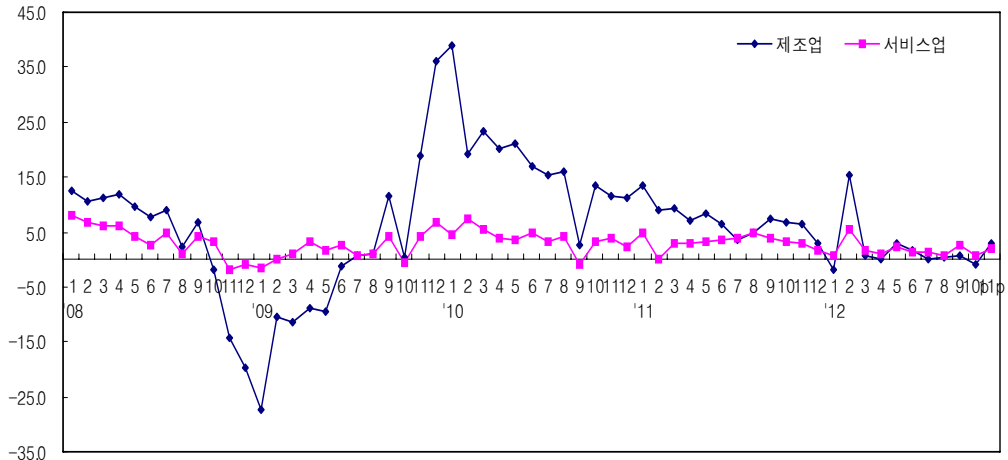
주: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12.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을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12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2012년 12월 생활물가지수는 106.1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함.

○ 2012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2% 상승(생활물가지수 1.6% 상승).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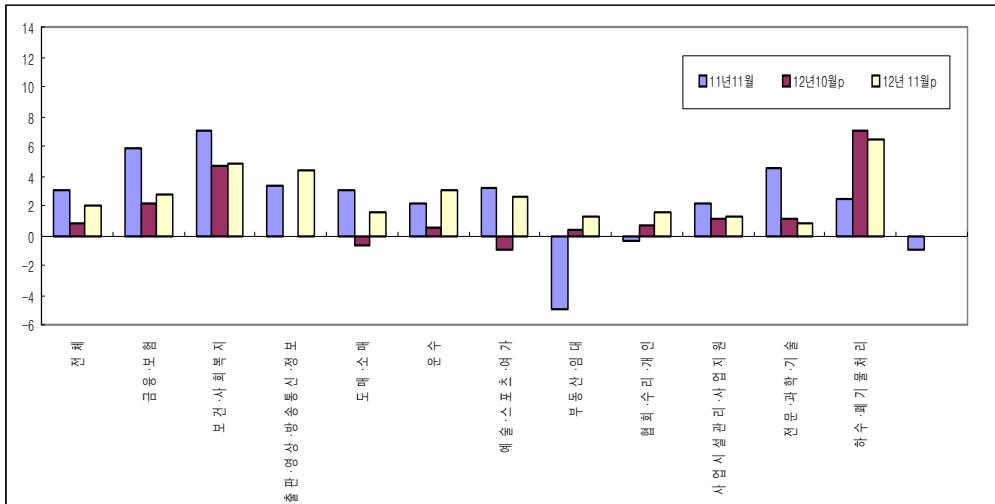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2.12), 『2012년 11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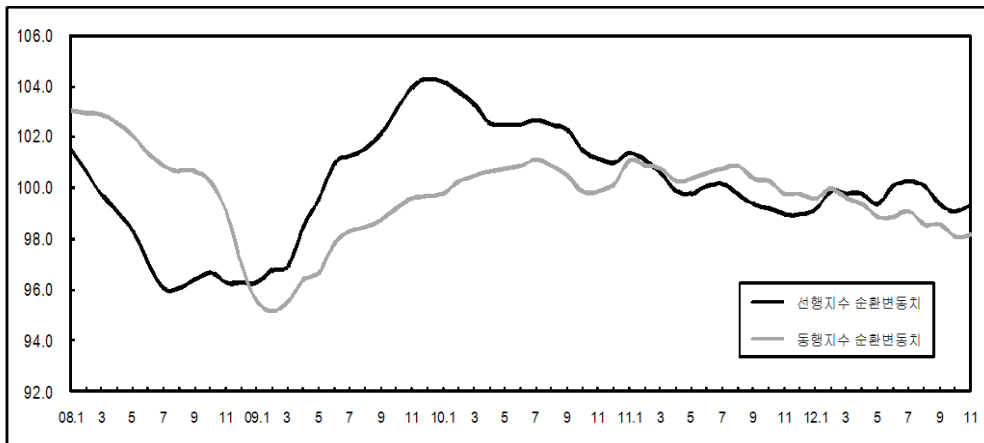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05=100)



자료 : 통계청, KOSIS.

(김복순,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고용률 증가

- 2012년 경제활동인구는 25,501천 명으로 전년대비 402천 명(1.6%)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891천 명으로 208천 명(1.4%) 증가하였고, 여성은 10,609천 명으로 193천 명(1.9%) 증가하였음.
- 2012년 경제활동참가율은 61.3%로 전년대비 0.2%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성(73.3%)이 전년대비 0.2%p 상승하였고, 여성(49.9%)도 전년대비 0.2%p 상승함(그림 4 참조).
- 2012년 고용률은 59.4%로 전년대비 0.3%p 상승함.
 - 남성의 고용률은 70.8%로 전년대비 0.3%p 상승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8.4%로 전년대비 0.3%p 상승하였음.
- 2012년 취업자는 24,681천 명으로 전년대비 437천 명(1.8%)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387천 명으로 전년대비 234천 명(1.7%)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294천 명으로 전년대비 203천 명(2.0%) 증가하였음(그림 5 참조).
- 2012년 실업자는 820천 명으로 전년대비 35천 명(-4.1%)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2%로 전년대비 0.2%p 하락하였음.

〈표 2〉 최근의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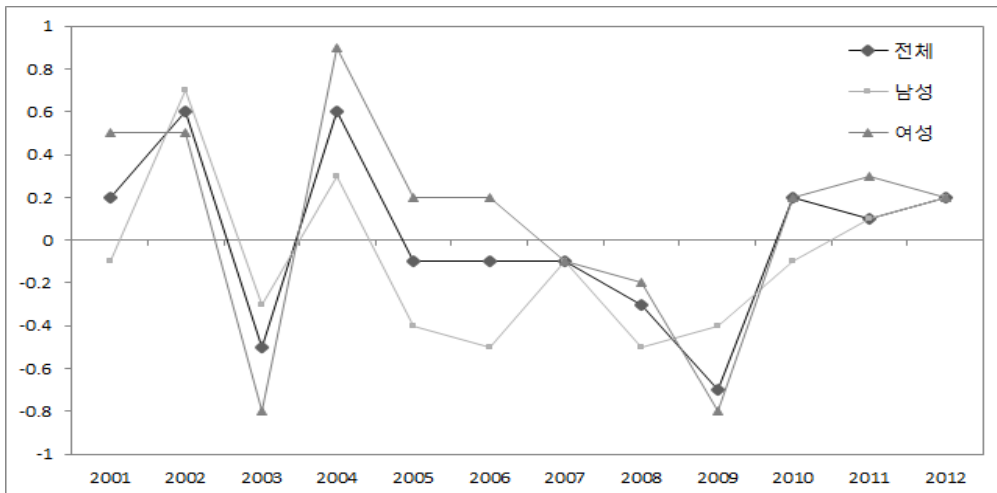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	2012	
					4/4분기	12월		4/4분기	12월
경제활동인구	24,347 (0.5)	24,394 (0.2)	24,748 (1.5)	25,099 (1.4)	25,202 (1.6)	24,880 (1.4)	25,501 (1.6)	25,526 (1.3)	25,139 (1.0)
참가율	61.5	60.8	61.0	61.1	61.1	60.3	61.3	61.1	60.1
취업자	23,577 (0.6)	23,506 (-0.3)	23,829 (1.4)	24,244 (1.7)	24,462 (2.0)	24,125 (1.9)	24,681 (1.8)	24,804 (1.4)	24,402 (1.1)
고용률	59.5	58.6	58.7	59.1	59.4	58.5	59.4	59.4	58.3
실업자	769	889	920	855	740	754	820	722	737
실업률	3.2	3.6	3.7	3.4	2.9	3.0	3.2	2.8	2.9
비경제활동인구	15,251 (2.0)	15,698 (2.9)	15,841 (0.9)	15,953 (0.7)	16,014 (0.3)	16,394 (0.8)	16,081 (0.8)	16,258 (1.5)	16,709 (1.9)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통계청(2013. 1), 『201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그림 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단위: %p,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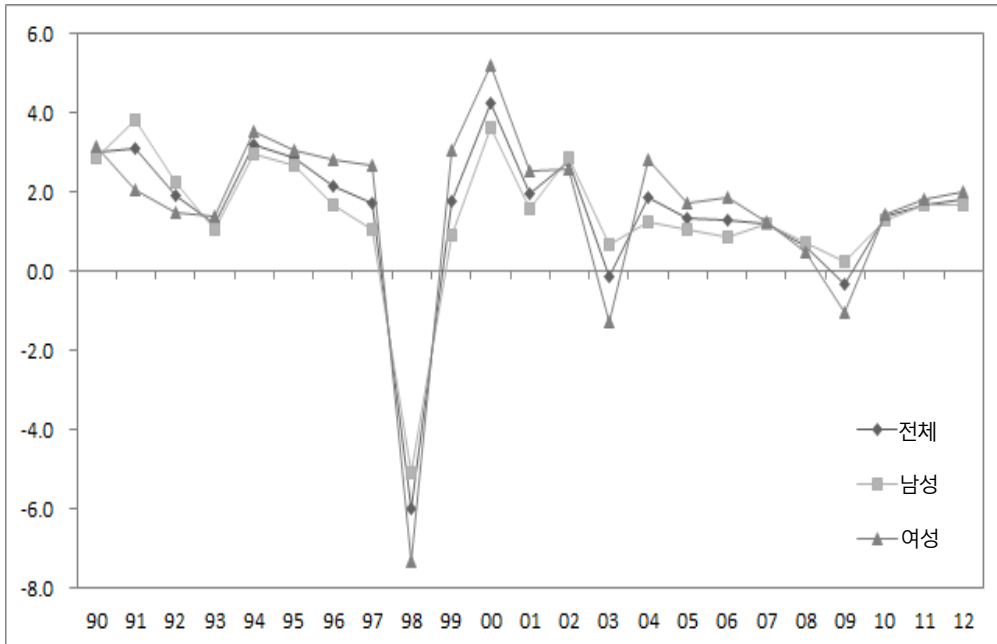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 남성 실업자는 504천 명으로 전년대비 26천 명(-4.8%) 감소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316천 명으로 전년대비 9천 명(-2.8%) 감소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4%로 전년대비 0.2%p 감소한 반면, 여성은 3.0%로 전년대비 0.1%p 감소함.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2년 비경제활동인구는 16,081천 명으로 전년대비 128천 명(0.8%)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437천 명으로 전년대비 44천 명(0.8%)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645천 명으로 전년대비 84천 명(0.8%)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242천 명으로 전년대비 12천 명(-0.3%), 구직단념자는 196천 명으로 전년대비 16천 명(-7.5%),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547천 명으로 전년대비 53천 명(-3.3%) 감소함.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

- 2012년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72천 명, 3.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04천 명, 1.9%), 전기·운수·통신·금융업(41천 명, 1.4%), 건설업(22천 명, 1.3%), 제조업(14천 명, 0.3%)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14천 명, -0.9%)에서는 감소함.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	2012	
					4/4분기	12월		4/4분기	12월
전 산업	23,577 (0.6)	23,506 (-0.3)	23,829 (1.4)	24,244 (1.7)	24,462 (2.0)	24,125 (1.9)	24,681 (1.8)	24,804 (1.4)	24,402 (1.1)
농림어업	1,693 (-2.0)	1,648 (-2.2)	1,566 (-5.0)	1,542 (-1.6)	1,521 (-1.5)	1,206 (-2.0)	1,528 (-0.9)	1,518 (-0.2)	1,194 (-1.0)
제조업	4,079 (-1.0)	3,836 (-3.2)	4,028 (5.0)	4,091 (1.6)	4,056 (-1.8)	4,071 (-2.1)	4,105 (0.3)	4,196 (3.5)	4,183 (2.8)
건설업	1,819 (-1.7)	1,720 (-5.0)	1,753 (1.9)	1,751 (-0.1)	1,832 (4.0)	1,832 (6.1)	1,773 (1.3)	1,792 (-2.2)	1,750 (-4.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677 (-0.8)	5,536 (-2.4)	5,469 (-1.2)	5,492 (0.4)	5,542 (1.8)	5,570 (1.5)	5,595 (1.9)	5,603 (1.1)	5,597 (0.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7,900 (4.0)	7,981 (4.6)	8,158 (2.2)	8,396 (2.9)	8,486 (3.1)	8,415 (2.8)	8,668 (3.2)	8,682 (2.3)	8,664 (3.0)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389 (-0.2)	2,761 (-0.9)	2,834 (2.6)	2,956 (4.3)	3,011 (5.5)	3,017 (5.1)	2,997 (1.4)	2,998 (-0.4)	3,000 (-0.6)

주 :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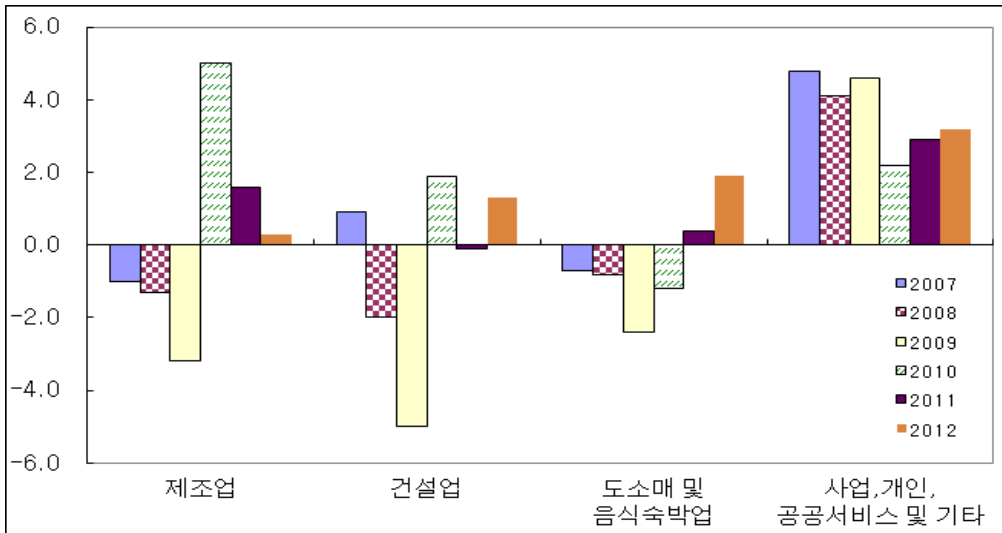
2) 9차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 통계청(2013. 1), 『201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

- 2012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6,969천 명으로 전년대비 121천 명(1.8%)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7,712천 명으로 전년대비 315천 명(1.8%) 증가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1,097천 명으로 436천 명(4.1%)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4,988천 명으로 2천 명(-0.0%), 일용근로자는 1,627천 명으로 120천 명(-6.9%) 감소함.
 - 상용근로자의 증가와 임시·일용근로자의 감소가 지속됨(그림 7 왼쪽 참조).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5,718천 명으로 124천 명(2.2%) 증가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1,251천 명으로 3천 명(-0.2%) 감소함. 자영업자는 상반기에 증가폭이 컸으나 하반기로 올수록 둔화되었음.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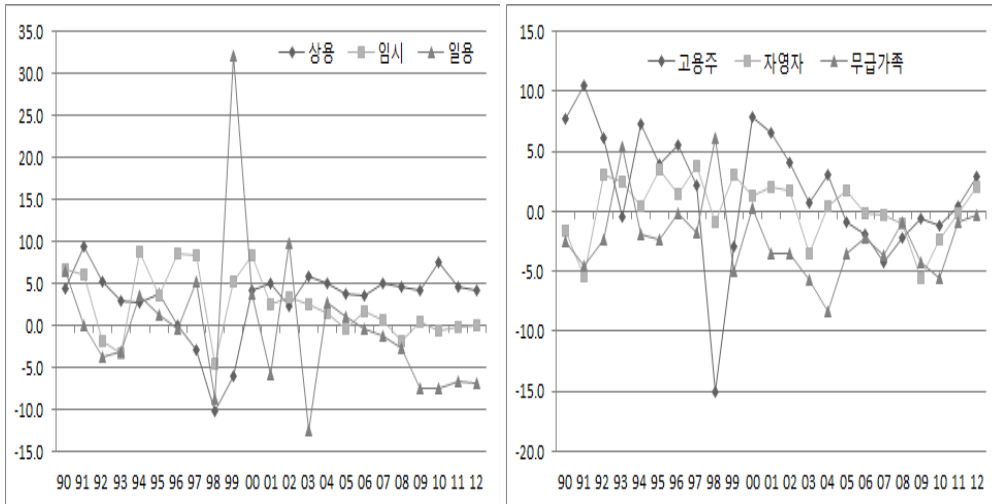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	2012	
					4/4분기	12월		4/4분기	12월
전 체	23,577 (0.6)	23,506 (-0.3)	23,829 (1.4)	24,244 (1.7)	24,462 (2.0)	24,125 (1.9)	24,681 (1.8)	24,804 (1.4)	24,402 (1.1)
비임금근로자	7,371 (-1.2)	7,052 (-4.3)	6,858 (-2.7)	6,847 (-0.2)	6,878 (1.5)	6,629 (1.5)	6,969 (1.8)	6,917 (0.6)	6,639 (0.2)
자영업주	5,970 (-1.3)	5,711 (-4.3)	5,592 (-2.1)	5,594 (0.0)	5,639 (2.3)	5,520 (2.5)	5,718 (2.2)	5,672 (0.6)	5,532 (0.2)
무급가족종사자	1,401 (-0.9)	1,341 (-4.2)	1,266 (-5.6)	1,254 (-1.0)	1,239 (-2.0)	1,109 (-3.1)	1,251 (-0.2)	1,245 (0.5)	1,107 (-0.2)
임금근로자	16,206 (1.5)	16,454 (1.5)	16,971 (3.1)	17,397 (2.5)	17,585 (2.2)	17,496 (2.0)	17,712 (1.8)	17,887 (1.7)	17,763 (1.5)
상용근로자	9,007 (4.5)	9,390 (4.3)	10,086 (7.4)	10,661 (5.7)	10,820 (4.8)	10,824 (4.6)	11,097 (4.1)	11,288 (4.3)	11,282 (4.2)
임시근로자	5,079 (-1.8)	5,101 (0.4)	5,068 (-0.7)	4,990 (-1.5)	5,042 (-0.2)	4,986 (-0.3)	4,988 (-0.0)	4,933 (-2.2)	4,875 (-2.2)
일용근로자	2,121 (-2.6)	1,963 (-7.4)	1,817 (-7.5)	1,746 (-3.9)	1,723 (-6.3)	1,686 (-6.7)	1,627 (-6.9)	1,666 (-3.3)	1,606 (-4.7)
36시간 미만	3,447 (14.1)	3,110 (-9.8)	3,617 (16.3)	4,534 (25.4)	3,217 (4.1)	3,250 (-0.8)	3,634 (-19.8)	3,219 (0.0)	3,326 (2.4)
36시간 이상	19,781 (-1.5)	20,032 (1.3)	19,839 (-1.0)	19,290 (-2.8)	20,937 (1.5)	20,570 (2.3)	20,637 (7.0)	21,271 (1.6)	20,738 (0.8)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3. 1), 『201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그림 7]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 전년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2년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634천 명으로 전년대비 900천 명(-19.8%) 감소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637천 명으로 1,346천 명 (7.0%) 증가함.

◆ 고졸 이하 실업률 하락

- 2012년 연령계층별 실업자 수는 15~29세(-7천 명), 30~39세(-25천 명), 40~49세(-7천 명), 60세 이상(-1천 명)에서 감소한 반면, 50~59세(5천 명)에서 증가함.
 - 2012년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15~29세(7.5%, -0.1%p), 30~39세(3.0%, -0.4%p), 40~49세(2.0%, -0.1%p), 60세 이상(2.4%, -0.2%p)에서 하락하였고, 50~59세(2.1%, 0.0%p)는 전년과 동일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도 중졸 이하(2.5%, -0.1%p), 고졸(3.6%, -0.4%p)에서 하락하였고, 대졸 이상(3.2%, 0.0%p)은 전년과 동일함.
- 2012년 전체 실업자 820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45천 명으로 전년대비 1천 명(-2.2%) 감소하였고,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775천 명으로 34천 명(-4.2%) 감소하였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	2012	
					4/4분기	12월		4/4분기	12월
전 체	769(3.2)	889(3.6)	920(3.7)	855(3.4)	740(2.9)	754(3.0)	820(3.2)	722(2.8)	737(2.9)
15~29세	315(7.2)	347(8.1)	340(8.0)	320(7.6)	292(7.1)	321(7.7)	313(7.5)	284(7.0)	304(7.5)
30~39세	194(3.1)	220(3.6)	214(3.5)	202(3.4)	171(2.9)	165(2.8)	177(3.0)	162(2.7)	160(2.7)
40~49세	142(2.1)	163(2.4)	165(2.5)	145(2.1)	131(1.9)	125(1.9)	138(2.0)	122(1.8)	117(1.7)
50~59세	87(2.0)	114(2.5)	120(2.5)	110(2.1)	94(1.8)	94(1.8)	115(2.1)	102(1.8)	100(1.8)
60세 이상	32(1.2)	45(1.6)	80(2.8)	77(2.6)	53(1.8)	49(1.8)	77(2.4)	52(1.6)	55(1.9)
중졸 이하	118(2.2)	130(2.5)	154(3.0)	133(2.6)	108(2.1)	109(2.3)	126(2.5)	98(2.0)	107(2.3)
고졸	384(3.8)	437(4.4)	420(4.2)	398(4.0)	349(3.5)	371(3.7)	359(3.6)	321(3.2)	344(3.4)
대졸 이상	268(3.0)	321(3.5)	346(3.6)	323(3.2)	284(2.8)	274(2.7)	335(3.2)	303(2.9)	286(2.7)
취업무경험 실업자	42	39	44	46	44	54	45	39	44
취업유경험 실업자	727	849	876	808	696	700	775	683	693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2013. 1), 『201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성재민, 노동정책분석실 전문위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2년 10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3.3% 상승

- 2012년 10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884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2,791천 원) 3.3% 상승함.
 - 2012년 10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정액급여 증가 영향으로 2011년 10월 대비 3.2% 상승한 3,057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는 전년동월대비 5.0% 상승해 2,471천 원을 기록함.
 - 반면 상용근로자의 초과급여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4% 하락하여 190천 원을, 특별급여 증가율은 4.3% 하락하여 396천 원을 기록함.

-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한 1,297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2012년 1~10월 누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973천 원으로 전년동누계(2,816천 원) 대비 5.6%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2011년 1~10월 누계 대비 5.5% 상승한 3,151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 가운데 정액급여는 2011년 1~10월 누계 대비 5.6%, 초과급여는 0.9%, 특별급여는 6.8% 상승함.
 - 임시·일용근로자는 2011년 1~10월 누계 대비 7.0% 상승한 1,282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2012년 10월 실질임금은 1.2% 상승함.
 - 2012년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010년 기준)을 감안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1.2% 상승을 기록함(그림 8 참조).
 - 2012년 1~10월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3.2% 상승함.

〈표 6〉 임금관련 주요 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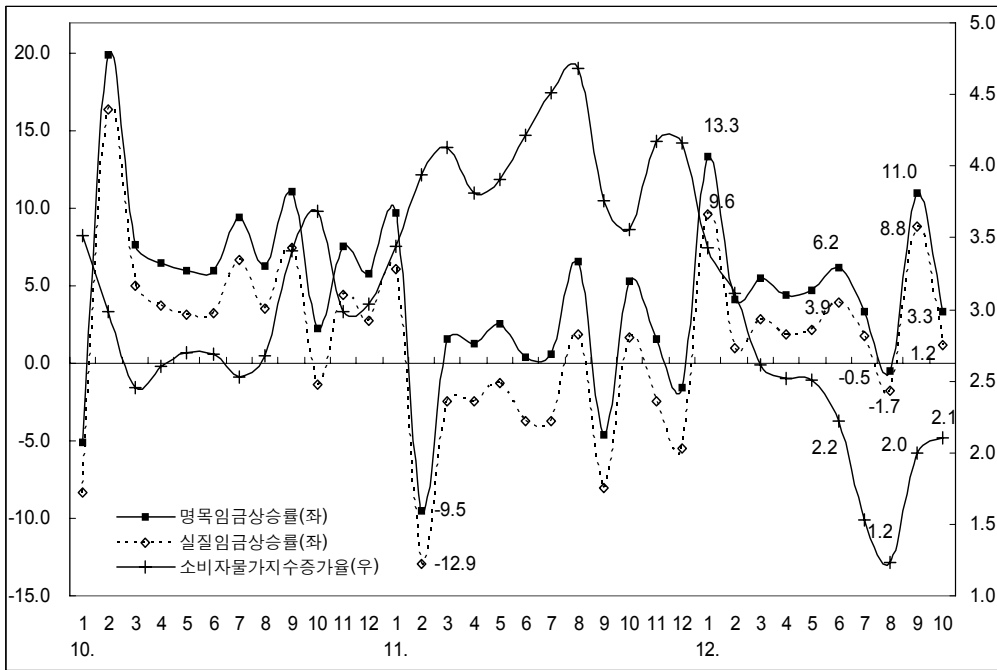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 2010=100.0)

	2009	2010	2011	2012				
				1~10월 누계	10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636 (2.6)	2,816 (6.8)	2,844 (1.0)	2,816 (1.2)	2,791 (5.3)	2,973 (5.6)	2,884 (3.3)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2,863 (2.2)	3,047 (6.4)	3,019 (-0.9)	2,987 (-0.7)	3,151 (5.5)	3,057 (3.2)	
	정액급여	2,139 (4.0)	2,234 (4.5)	2,341 (4.8)	2,326 (4.6)	2,354 (5.2)	2,456 (5.6)	2,471 (5.0)
	초과급여	175 (-2.2)	196 (12.2)	179 (-8.4)	179 (-7.7)	192 (-9.2)	181 (0.9)	190 (-1.4)
	특별급여	550 (-2.8)	617 (12.3)	498 (-19.3)	482 (-18.6)	414 (-0.8)	514 (6.8)	396 (-4.3)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073 (1.9)	1,056 (-1.6)	1,215 (15.1)	1,198 (13.0)	1,238 (16.4)	1,282 (7.0)	1,297 (4.8)	
소비자물가지수	97.1 (2.8)	100.0 (2.9)	104.0 (4.0)	103.8 (4.0)	104.9 (3.6)	106.2 (2.3)	106.9 (2.1)	
실질임금증가율	-0.1	3.8	-2.9	-2.7	1.6	3.2	1.2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0=10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10월 전 산업에서 임금상승률 상승

○ 2012년 10월 기준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임금이 상승함.

- 2012년 10월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을 보면, 금융 및 보험업(10.9%), 부동산 및 임대업(8.1%), 사업서비스업(6.6%) 등에서 임금상승률이 크게 나타남.
-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이며,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나타남.

○ 2012년 1~10월 누계 기준 부동산 및 임대업의 임금 상승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12년 1~10월 누계 기준 전 산업에서 임금이 증가함.
- 특히 부동산 및 임대업(9.0%), 운수업(8.6%), 도매 및 소매업(6.7%), 제조업(6.5%) 등에서 두드러짐.

〈표 7〉 산업별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0	2011	2012			
			1~10월 누계		10월	
			1~10월 누계	10월	1~10월 누계	10월
전 산업	2,816 (6.8)	2,844 (1.0)	2,816 (1.2)	2,791 (5.3)	2,973 (5.6)	2,884 (3.3)
광업	3,000 (7.3)	3,309 (10.3)	3,281 (10.3)	3,015 (10.0)	3,496 (6.6)	3,143 (4.2)
제조업	2,985 (9.1)	3,034 (1.6)	2,999 (2.2)	3,051 (7.5)	3,193 (6.5)	3,109 (1.9)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455 (7.0)	5,482 (0.5)	5,190 (-0.1)	4,233 (0.2)	5,187 (0.0)	4,429 (4.6)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441 (5.2)	2,488 (1.9)	2,450 (1.5)	2,454 (4.2)	2,610 (6.5)	2,590 (5.6)
건설업	1,944 (7.9)	2,181 (12.2)	2,183 (13.1)	2,156 (14.8)	2,266 (3.8)	2,236 (3.7)
도매 및 소매업	2,769 (7.1)	2,942 (6.3)	2,887 (5.8)	2,891 (13.0)	3,081 (6.7)	3,010 (4.1)
운수업	2,381 (5.4)	2,393 (0.5)	2,375 (0.1)	2,477 (5.3)	2,565 (8.0)	2,531 (2.2)
숙박 및 음식점업	1,462 (5.0)	1,653 (13.0)	1,643 (13.0)	1,673 (12.4)	1,736 (5.7)	1,708 (2.1)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385 (4.7)	3,692 (9.1)	3,661 (9.7)	3,552 (13.0)	3,825 (4.5)	3,597 (1.3)
금융 및 보험업	4,680 (4.7)	4,771 (1.9)	4,743 (1.9)	4,252 (3.3)	4,966 (4.7)	4,716 (10.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65 (4.3)	2,017 (2.6)	1,998 (2.3)	1,947 (8.7)	2,176 (9.0)	2,104 (8.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957 (6.9)	3,870 (-2.2)	3,818 (-1.7)	3,882 (5.0)	4,047 (6.0)	4,028 (3.7)
사업서비스업	1,848 (8.2)	1,700 (-8.0)	1,682 (-8.1)	1,683 (-6.9)	1,774 (5.5)	1,794 (6.6)
교육서비스업	3,157 (1.4)	2,985 (-5.4)	3,007 (-5.7)	2,737 (-5.7)	3,152 (4.8)	2,832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594 (2.4)	2,490 (-4.0)	2,456 (-4.7)	2,496 (-1.4)	2,596 (5.7)	2,547 (2.1)
여가관련서비스업	2,107 (0.9)	2,130 (1.1)	2,080 (1.7)	1,955 (1.4)	2,172 (4.4)	2,095 (7.1)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102 (4.0)	2,185 (3.9)	2,179 (4.0)	2,177 (9.6)	2,216 (1.7)	2,163 (-0.6)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10월 사업체규모별 전체에서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 상승

- 2012년 10월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전 사업체에서 모두 상승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은 2012년 10월 기준 2,56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9% 상승하였으며 이는 초과급여(5.4%)와 정액급여(4.7%) 상승에 기인함.
 - 300인 이상 사업체의 2012년 10월 상용임금총액은 4,109천 원으로 2011년 10월 대비 0.8% 상승하였으며, 이는 초과급여(4.4%)와 정액급여(1.3%) 상승의 영향임.
 - 반면 300인 이상 규모의 특별급여는 3.5% 감소함.
- 2012년 1~10월 누계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전 사업체에서 증가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임금상승률(6.3%)과 300인 이상 규모의 임금상승률

(3.4%)은 모두 플러스 증가를 기록함.

- 그러나 300인 이상 규모의 초과급여(-4.0%)는 마이너스를 기록함.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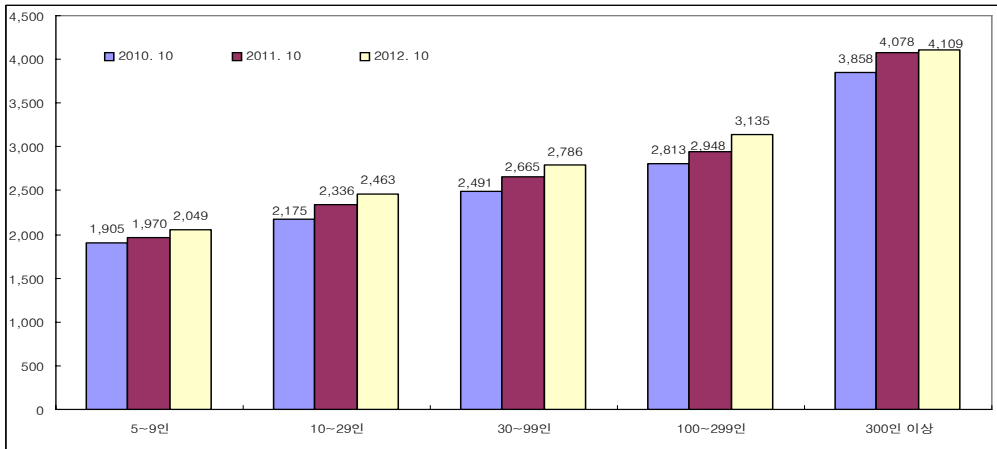
(단위: 천 원, %)

		2010	2011	2012			
				1~10월 누계		1~10월 누계	
						10월	10월
전 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3,047 (6.4)	3,019 (-0.9)	2,816(1.2)	2,791 (5.3)	2,973 (5.6)	2,884 (3.3)
	정액급여	2,234 (4.5)	2,341 (4.8)	2,987 (-0.7)	2,961 (3.3)	3,151 (5.5)	3,057 (3.2)
	초과급여	196 (12.2)	179 (-8.4)	2,326 (4.6)	2,354 (5.2)	2,456 (5.6)	2,471 (5.0)
	특별급여	617 (12.3)	498 (-19.3)	179 (-7.7)	192 (-9.2)	181 (0.9)	190 (-1.4)
	비상용임금총액	1,056 (-1.6)	1,215 (15.1)	482 (-18.6)	414 (-0.8)	514 (6.8)	396 (-4.3)
5~299인	상용임금총액	2,699 (5.5)	2,675 (-0.9)	2,487 (1.5)	2,450 (4.6)	2,643 (6.3)	2,569 (4.9)
	정액급여	2,082 (4.3)	2,204 (5.9)	2,647 (-0.8)	2,603 (2.6)	2,809 (6.1)	2,725 (4.7)
	초과급여	176 (13.6)	150 (-14.5)	2,191 (5.7)	2,216 (6.6)	2,322 (6.0)	2,335 (5.4)
	특별급여	441 (8.4)	321 (-27.3)	150 (-14.0)	158 (-15.2)	155 (3.2)	159 (0.6)
	비상용임금총액	1,059 (-1.6)	1,216 (14.8)	306 (-27.2)	228 (-15.9)	332 (8.4)	230 (0.7)
300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4,291 (9.1)	4,273 (-0.4)	4,126 (0.8)	4,078 (5.7)	4,266 (3.4)	4,109 (0.8)
	정액급여	2,779 (5.2)	2,842 (2.3)	4,242 (0.2)	4,215 (4.3)	4,394 (3.6)	4,268 (1.3)
	초과급여	268 (9.6)	286 (6.7)	2,827 (2.3)	2,839 (1.3)	2,943 (4.1)	2,965 (4.4)
	특별급여	1,245 (18.7)	1,146 (-8.0)	287 (8.3)	311 (3.4)	275 (-4.0)	300 (-3.5)
	비상용임금총액	1,025 (-0.3)	1,208 (17.8)	1,128 (-6.2)	1,065 (13.2)	1,177 (4.3)	1,003 (-5.8)

주: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9〉 상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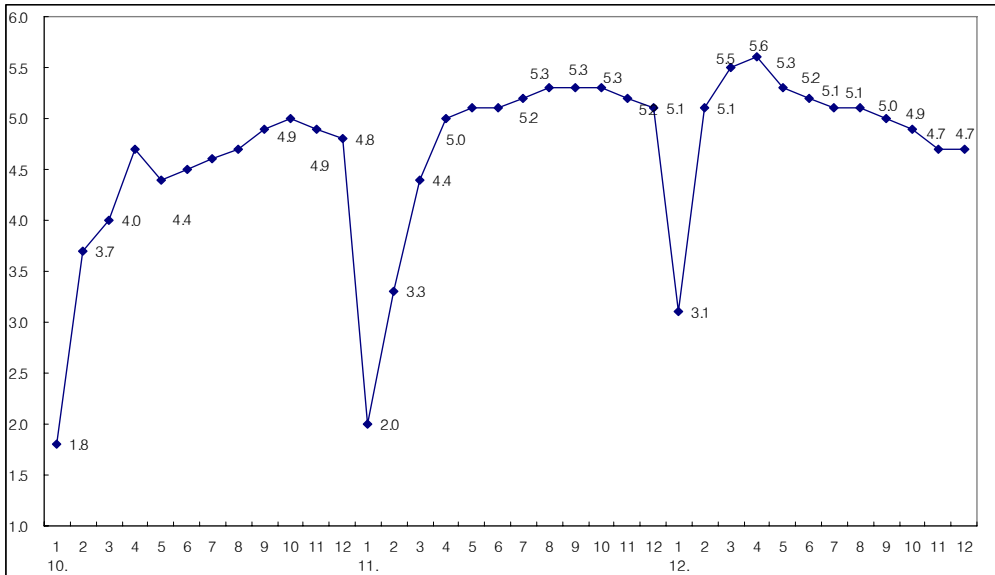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12월 협약임금 인상률 4.7%

- 2012년 12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7%로 2011년 12월 인상률(5.1%)에 비해 0.4%p 하락
 - 2012년 10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9%로 2011년 10월 인상률(5.3%)에 비해 0.4%p 하락
- 2012년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7%로 전년 인상률(5.1%)에 비해 0.4%p 하락
 - 연도별 협약임금 인상률 : 2009년(1.7%)→2010년(4.8%)→2011년(5.1%)→2012년(4.7%)

[그림 10]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주 :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2년 10월 근로시간 0.6% 증가

- 2012년 10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6% 증가함.
 - 2012년 10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3.9시간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172.9시간)에 비해 1시간(0.6%) 증가함(표 9 참조).

〈표 9〉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천 원, %)

	2010	2011	2012			
			1~10월 누계		10월	
			1~10월 누계	10월	1~10월 누계	10월
전체근로시간	176.7(0.3)	176.3(-0.2)	174.8(-0.1)	172.9(-3.2)	174.3(-0.3)	173.9(0.6)
상용총근로시간	184.7(0.2)	182.1(-1.4)	180.4(-1.3)	178.6(-4.7)	179.9(-0.3)	179.9(0.7)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8.3(-0.6)	168.5(0.1)	166.8(0.3)	164.1(-3.3)	167.1(0.2)	166.8(1.6)
상용초과근로시간	16.4(8.6)	13.6(-17.1)	13.6(-17.1)	14.5(-18.1)	12.8(-5.9)	13.1(-9.7)
비상용근로시간	115.4(-3.3)	122.5(6.2)	122.0(5.4)	120.8(6.2)	121.2(-0.7)	119.4(-1.2)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1~10월 누계 근로시간은 전년동기대비 0.3% 감소함.
 - 2012년 1~10월 누계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4.3시간을 기록하여 전년동누계(174.8시간)에 비해 0.5시간(-0.3%) 감소함.

◆ 2012년 10월 금융 및 보험업 등 대부분 산업에서 근로시간 증가

- 2012년 10월 대부분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2012년 10월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금융 및 보험업(166.1시간, 4.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58.9, 3.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75.4시간, 2.8%), 숙박 및 음식점업(185.3시간, 2.8%) 등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반면 제조업(185.7시간, -1.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170.4시간, -1.2%), 교육서비스업(148.9시간, -0.2%)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2012년 10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 및 임대업(191.6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교육서비스업(148.9시간)이 가장 짧은 업종으로 나타남.
- 2012년 1~10월 누계 근로시간은 전 산업에서는 감소하였지만, 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2012년 1~10월 누계 근로시간이 증가한 산업은 사업서비스업(173.4시간, 2.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4.9, 1.9%), 운수업(182.0시간, 1.1%) 등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반면 제조업(186.2시간, -1.6%), 건설업(151.5시간, -1.2%)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표 10〉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 %)

	2010	2011	2012			
			1~10월 누계	10월		
전 산업	176.7(0.3)	176.3(-0.2)	174.8(-0.1)	172.9(-3.2)	174.3(-0.3)	173.9(0.6)
광업	188.1(0.3)	186.9(-0.6)	185.6(0.1)	182.4(-3.0)	185.7(0.1)	183.2(0.4)
제조업	192.1(1.9)	190.6(-0.8)	189.2(-0.4)	188.4(-3.5)	186.2(-1.6)	185.7(-1.4)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6.9(-0.6)	177.1(0.1)	175.2(0.1)	172.4(-0.4)	175.1(-0.1)	170.4(-1.2)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92.9(-0.6)	186.2(-3.5)	184.6(-3.5)	181.6(-6.1)	184.8(0.1)	183.8(1.2)
건설업	146.1(-0.7)	153.9(5.3)	153.4(5.6)	150.9(3.2)	151.5(-1.2)	151.9(0.7)
도매 및 소매업	177.2(-1.0)	175.1(-1.2)	173.4(-1.3)	170.1(-5.3)	174.3(0.5)	174.7(2.7)
운수업	184.6(0.1)	181.6(-1.6)	180.0(-2.0)	181.6(-2.0)	182.0(1.1)	182.8(0.7)
숙박 및 음식점업	163.7(-0.4)	186.2(13.7)	185.3(14.1)	180.2(7.5)	187.5(1.2)	185.3(2.8)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6.2(-0.4)	164.5(-1.0)	162.9(-0.7)	159.3(-4.7)	164.1(0.7)	163.5(2.6)
금융 및 보험업	165.3(-0.9)	163.6(-1.0)	161.7(-0.9)	158.9(-3.6)	163.8(1.3)	166.1(4.5)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0.4(-0.8)	194.2(-3.1)	192.4(-3.4)	191.6(-5.1)	193.8(0.7)	191.6(0.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6.3(-0.8)	166.2(-0.1)	164.1(0.1)	161.8(-2.5)	165.5(0.9)	165.3(2.2)
사업서비스업	180.1(0.6)	172.1(-4.4)	169.6(-4.7)	169.1(-8.1)	173.4(2.2)	173.2(2.4)
교육서비스업	149.9(-2.5)	152.9(2.0)	151.6(2.4)	149.2(-3.3)	151.8(0.1)	148.9(-0.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6.5(0.1)	173.5(-1.7)	171.6(-1.7)	170.7(-4.3)	174.9(1.9)	175.4(2.8)
여가관련서비스업	158.7(-1.8)	157.1(-1.0)	156.1(-0.9)	153.8(-4.7)	157.9(1.2)	158.9(3.3)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73.9(-0.9)	173.6(-0.2)	172.6(-0.2)	165.5(-4.6)	169.1(-2.0)	166.2(0.4)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10월 10~99인 사업체를 제외하고 근로시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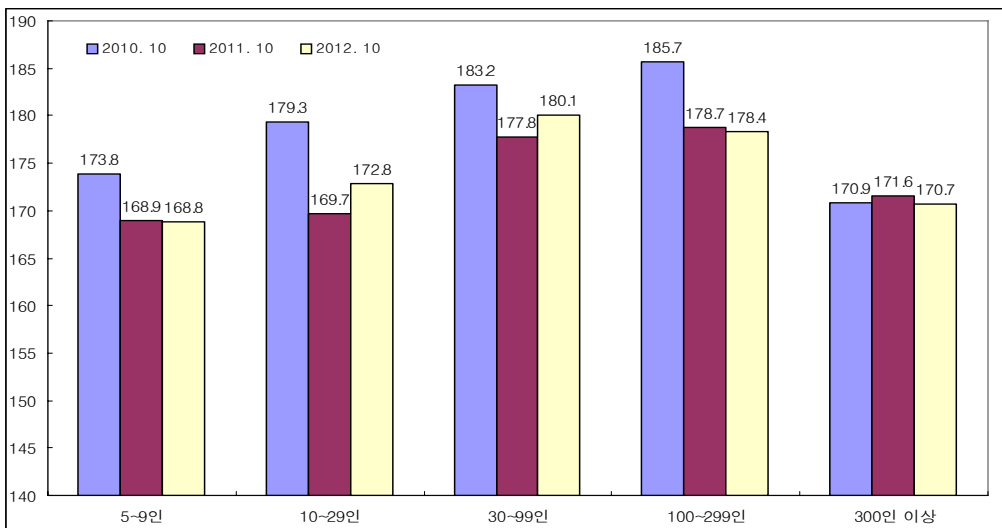
○ 2012년 10월 사업체규모별 전체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0~99인 사업체를 제외하고 전 규모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8.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1%,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8.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2%,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0.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5% 감소함(그림 11 참조).
- 반면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2.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8%,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0.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3% 증가함.

- 한편 2012년 1~10월 누계 사업체규모별 전체근로자 근로시간은 30~99인 규모를 제외한 전 규모에서 감소함.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1~10월 누계 총 근로시간은 171.7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0.2%,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1.9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0.8%,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9.6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0.1%,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1.3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0.6% 감소함.
 - 반면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9.2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0.5% 증가함.

[그림 11]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주: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정성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정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거부권 행사

- 정부는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
 -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글로벌 코리아 시대를 맞아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고 전해짐.
 - 이에 택시업계는 “국회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부결되면 전국 택시가 무기한 운행 중단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며 국회의 재의결을 촉구함.
 - 반면 버스업계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정부의 조치는 대중교통 체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힘.
- 정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대체입법으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함.
 - 대체법안은 △감차보상, △공영차고제, △임금체계 개선, △요금현실화 등의 내용을 포함함.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은 택시를 고급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택시업계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수용하는 것이 택시 개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하지만 택시업계는 “정부의 대체법안은 새로운 내용이 없고 그대로 시행될지 믿을 수 없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 쌍용자동차 노사,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 합의

- 쌍용자동차 노사는 1월 10일 무급휴직자 455명을 3월 1일부터 복직시키기는 데에 합의함.
 - 쌍용자동차 노사는 “2월 초까지 복직 조건과 절차, 생산라인 배치근무인원 등에

- 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현장에 배치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힘. 하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쌍용자동차 구조조정과 파업 때의 희망퇴직자 1,900명과 정리해고자 159명 등은 복직 대상에서 제외됨.
- 쌍용자동차 측은 “지난 3년간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이를 통해 무급휴직자 복귀 여건을 만들어온 만큼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겠다”고 말함.
 - 쌍용자동차 노조 관계자는 “그간 무급휴직자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간 소통을 해왔다”며 “이를 계기로 회사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조도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함.
 -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합의안에서 제외된 정리해고자들의 복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한편 쌍용자동차의 국정조사에 관해 쌍용자동차 노사와 금속노조 등의 의견이 달라 이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 쌍용자동차 노조와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쌍용자동차 정상화 추진 위원회’는 22일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강행한다면 회사가 또다시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밝힘. 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 또한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함.
 - 반면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등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함. 일부 야당 의원들 또한 “여야가 국회를 진정한 민생국회로 만들고자 한다면 쌍용자동차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함.

◆ 현대자동차 노사,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갈등 지속

- 현대자동차는 지난달에 이어 1월 23일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을 하겠다고 밝힘.
- 현대자동차 측은 “사내하청 문제해결을 위해 2016년까지 3,500명의 사내하청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먼저 2013년까지 1,750명을 채용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함.
 - 이에 비정규직 노조는 신규채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내하청 전원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한편 지난 1차 신규채용에서는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 6,800명 가운데 80%인 5,394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해고자 최모 씨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인사발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
 - 이에 최모 씨는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원 정규직화해야 한다”며 출근을 거부하고 농성을 계속 이어감.
 -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최모 씨가 정규직 고용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대처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현재 현대자동차 노사간의 특별협의를 지난해 12월 27일 현대차지부와 비정규직지회의 입장 차이로 중단된 상태임.
 - 비정규직 노조 측은 “현대차지부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회사와 독자교섭을 벌이겠다”며 “무한정 농성을 이어갈 수 없는 만큼 여러 방향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함.
 - 하지만 회사 측은 “비정규직지회는 회사 측과 법률적으로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함.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현대자동차는 철탑농성하는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함. 또한 한 관련 전문가는 “학계, 노동계, 법조계 등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제3의 운영기구를 만들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아울러 비정규직 노조 내부에서는 농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노갈등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짐.
 - 1월 2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정규직지회 내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하고 지회 집행부를 비판하면서 비정규직 노조의 각성과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였다고 전해짐.
 - 이에 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전원 정규직화만 요구하면 조직이 고립무원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력 인정 등 내용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고 나머지 비정규직 문제는 추후 논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말함.
- 울산지방법원은 1월 8일, 18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송전탑 농성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행하였으나 노조의 반발로 무산됨.
 - 이는 한국전력이 제기한 ‘철탑 출입금지 및 퇴거’와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업무방해 및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임.
 - 이에 노조는 강제집행에 맞서 주간조 6시간, 야간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임.
 - 시민단체들은 “철탑농성에 대한 강제적인 공권력 동원은 문제해결이 아니라 부정

적인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며 규탄함.

- 현재 법원은 농성자 2인에 대해 15일부터 1인당 30만 원씩 간접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

○ 한편 현대자동차는 3월 주간연속 2교대제 전면시행에 앞서 1월 7일부터 18일까지 시범 운행에 들어감.

- 이에 따라 주간1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8시간을 근무하고, 주간2조는 오후 3시 4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0분(1시간 연장근무)까지 9시간을 근무함. 그간 현대자동차의 주간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근무함.
-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시범실시를 통해 미비점과 개선사항을 보완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주간연속 2교대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 노조 측은 “여가시간 및 건강관리 차원에서 조합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함.
- 하지만 주간연속 2교대제와 관련해 인원충원, 주말특근, 생산인력 투입조정 문제 등에 대해 노사간의 입장차이가 있어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신세계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둘러싼 논란 심화

○ 민주당통합당 노웅래·장하나 의원은 1월 16일 기자회견에서 신세계 이마트가 직원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함.

- 1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원들은 신세계 이마트가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사생활을 알아보는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정황이 있는 자료를 공개했다고 전해짐.
- 이에 대해 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내부 문건이 존재한 것은 맞으나 이는 개별 지점 차원에서 만들었고 실제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함.
- 현재 신세계 이마트 노조는 노조원 중 1명은 강등되고 2명은 해고된 상태임.

○ 이에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신세계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함.

-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직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은 노조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등 세 분야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음.

-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그동안 제기된 이마트 관련 의혹이 사실인지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노웅래·장하나 의원은 23일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를 즉각 복직시키고,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는 등 앞으로 직원 사찰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지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함.
 - 민주노총 산하 민간서비스산업 노동조합연맹과 이마트 노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5개 단체 또한 “직원 사찰 등 불법행위를 엄정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한 관련 전문가는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활용해 인터넷 사이트의 가입여부를 조회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민등록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중범죄”라고 말함.

◆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대화 합의**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하 반올림)는 1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의 대화 제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힘.
 - 이는 17일 삼성전자 측이 “합당한 대표단을 구성해 대화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데에 따른 것임.
 - 반올림 측은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의미와 의지를 다지며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삼성이 백혈병 피해자와 근로복지공단 간의 산재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며 산재 인정을 부정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함.
 - 삼성전자 측은 “2011년 8월 신설한 ‘퇴직 임직원 암 발병자 지원 제도’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보상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 한편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는 2007년 황모 씨가 백혈병으로 숨지면서 공론화되었음.
- 하지만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에 대해 양측의 시각 차이가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삼성전자 측은 이번 협상에서 발병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전해짐.
 - 반면 반올림 관계자는 “회사 측이 백혈병 등 피해사실에 대해 직업병임을 동의하는 게 중요하다”며 “피해자 보상을 논의함과 동시에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함.

-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산재 인정 여부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이므로 “이번 대화는 민사적 쟁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함.

◆ **신한은행, 계약직 창구직원 정규직으로 전환**

- 신한은행은 1월 11일 계약직 창구직원 833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향후 채용하는 모든 창구직원들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힘.
 - 신한은행 측은 “정규직 전환 뒤 실적이 오르고 업무 만족도가 높아져 창구직원과 은행이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정규직화를 통해 “이들은 정규직 직원과 같이 정년이 보장되고 직급에 따라 직무도 확대되며 복리후생 등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함.

◆ **고용노동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는 1월 28일 노사협의회의 명칭변경, 사업장 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제도 보완, 정기회의 개최주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노사협의회 명칭을 사업장협의회로 변경해 비정규직과 미조직 근로자 등 사업장 내 다양한 구성원을 포괄하도록 함.
 - 근로자위원을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과반수 노조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를 당연직 근로자위원으로 하는 등 사업장협의회 선출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정기회의 개최주기를 3개월에 1회에서 연 4회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함.
 - 이 밖에 협의·보고·의결사항의 간소화 및 통합, 사내하도급 및 파견 근로자의 참여기회 제공,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거나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 부여, 취약근로자의 고충처리 지원, 중앙노사공익협의회의 운영근거마련을 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노사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노사간 상생협력을 구축하고, 자율적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여 생산·사업공동체의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함. **KLI**

(박지은, 노동정책분석실 연구원)